



군보는 공문으로써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제 480호 2015. 7. 30(목)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려

- 진안군 조례 제2129호 (진안군 국제화추진 협의회 조례 폐지조례)1
- 진안군 조례 제2130호 (진안군 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2
- 진안군 조례 제2131호 (진안군 진안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3
- 진안군 조례 제2132호 (진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5
- 진안군 조례 제2133호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 진안군 조례 제2134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19

회 말									

발행 진 안 군 (편집 행정지원과(063)430-2838

진안군의회 의결을 얻은 진안군 국제화추진 협의회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진안군수 이항준 

2015년 7월 30일

진안군 조례 제2129호

진안군 국제화추진 협의회 조례 폐지조례

진안군 국제화추진 협의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의회 의결을 얻은 진안군 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진안군수 이항로



2015년 7월 30일

진안군 조례 제2130호

진안군 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진안군 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의회 의결을 얻은 진안군 진안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진안군수 이항로



2015년 7월 30일

진안군 조례 제2131호

진안군 진안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진안군 진안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진안시장의 빈 점포나 여유공간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설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지역특산품의 홍보 또는 전시판매
2. 저소득층, 노인이 생산한 관내 농산물 등을 직접 판매하려는 경우

제7조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운영기준) ① ~ ③ (생략) <u><신 설></u></p> <p>④ 제1항 ~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을 운영 할 경우 군수는 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등을 시장에서 직접 판매할 때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7조(운영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군수는 진안시장의 빈 점포나 여유공간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설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u></p> <p>1. <u>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지역특산품의 홍보 또는 전시판매</u></p> <p>2. <u>저소득층, 노인이 생산한 관내 농산물 등을 직접 판매하려는 경우</u></p> <p>⑤ -----제4항----- ----- ----- ----- ----- -----.</p> <p><u><삭 제></u></p>

진안군의회 의결을 얻은 진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진안군수 이병로



2015년 7월 30일

진안군 조례 제2132호

진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진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 주차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자가운전하는 차량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자가운전하는 차량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자가운전 또는 동승한 차량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배기량 1000cc미만의 경형

자동차

5.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성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며, 설치 기준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 군수는 부설주차장을 신규 설치하거나 주차면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여성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출입구 또는 접근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2.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가까운 장소
3. 사각이 없는 밝은 장소

④ 여성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선 및 표지는 분홍색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과태료 처분)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이 하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6의 시설물 7. 건축물의 시설기준 중 “시설면적 300㎡당 1대”를 “시설면적 350㎡당 1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③ (생략) <u><신 설></u>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③ (현행과 같음) ④ <u>군수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2개이상 주차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자가운전하는 차량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자가운전하는 차량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자가운전 또는 동승한 차량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배기량 1000cc미만의 경형 자동차 5.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신 설>

제20조(과태료 처분) 법 제30조제 3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8조의2(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 ①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여성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며, 설치 기준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 군수는 부설주차장을 신규 설치하거나 주차면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여성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출입구 또는 접근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2.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가까운 장소
3. 사각이 없는 밝은 장소

④ 여성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선 및 표지는 분홍색으로 한다.

제20조(과태료 처분)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이 하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 (제20조 관련)
(단위:만원)

위반행위별	구분	과태료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 (법 제12조 제2항 단서 규정 관련)	바닥면적 500 m ² 미만	90
	바닥면적 500m ² 이상	100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중지 또는 폐기한 자 (법 제16조 관련)	허가 주차장	50
	신고 주차장	40

- 비고 -

군수는 구체적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위 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조정 부과할 수 있다.

[별표 6]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4조제2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생략)...	
7.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300m ² 당 1대

...(생략)...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20조 관련)

위 반 행 위	과태료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50만원
2. 법 제1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 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3. 법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4.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50만원

비고: 위 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별표 6]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4조제2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현행과 같음)...	
7.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300m ² 당 1대

...(현행과 같음)...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 (제20조 관련)

위 반 행 위	과태료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50만원
2. 법 제1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 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3. 법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4.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50만원

비고 : 위 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진안군의회 의결을 얻은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진안군수 이항로



2015년 7월 30일

진안군 조례 제2133호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대책

제2조제2호에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제2조제3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양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20인이내”를 “25인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전주보훈지청장

제3조제5항제3호 중 “7733부대”를 “제7733부대”로, “작전장교”를 “작전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정보과장”을 “정보보안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7733부대”를 “제7733부대”로, “동원장교”를 “동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3호 중 “관계기관외”를 “관계기관간”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5조 및 제6조로 하며, 제5조(중전의 제4조) 제3항 중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을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을 “관련이 있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통합방위법」 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지역방위의 효율적인 육성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운영한다.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안군 방위 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진안군 민방위협의회

제6조(중전의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제6항제3호규정에 의한”을 “「통합방위법」 제22조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개활지”를 “탁 트인 곳”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생목”을 “입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이동식 장애물 (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을 말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② 협의회는 지역내 테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 작전 시 「진안군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통합방위 대비책</p> <p><신 설></p> <p>2.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3.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p> <p><신 설></p>	<p>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p> <p>-----</p> <p>-----</p> <p>-----.</p> <p>1.-----</p> <p style="padding-left: 2em;">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대책</p> <p>2.-----</p> <p style="padding-left: 2em;">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p> <p style="padding-left: 2em;">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p> <p style="padding-left: 2em;">다. 취약지역 대비책</p> <p style="padding-left: 2em;">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p> <p>3.-----</p> <p>-----</p> <p style="padding-left: 2em;">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p>

<신 설>

4. 취약지역 대비책

5. ~ 6. (생 략)

제3조(협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
을 포함한위원 10인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
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
다.

②·③ (생 략)

④협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1. ~ 10. (생 략)

<신 설>

11. (생 략)

⑤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
를 두며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
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
원에 대한 사기양양 및 민
·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삭 제>

5. ~ 6. (현행과 같음)

제3조(협회의 구성 및 운영) ①

-----25인
이내-----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1. ~ 10. (현행과 같음)

11. 전주보훈지청장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⑤-----

-----.

정에 의한 진안군 민방위협의 회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 ①·② (생략)
-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 내지 9인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 ⑤ (생략)

제5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6항제3호규정에 의한 취약지역의 대비책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생략)
- 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을 설치

제5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

----.
- ④ -----
-----관련이 있는 부서장-----

--.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통합방위법」 제22조 제5항에 따른-----

- .
- 1. (현행과 같음)
- 2. 탁 트인 곳-----

가. 10년생 이상의 생목

나. (생 략)

다. 이동식 장애물 (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

라. (생 략)

3. (생 략)

제6조(세부사항의 위임)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정한다.

<신 설>

<신 설>

가.-----입목

나. (현행과 같음)

다. 이동식 장애물 (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을 말한다)

라.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삭 제>

제7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② 협의회는 지역내 테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 작전시 「진안군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진안군의회 의결을 얻은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진안군수 이항로



2015년 7월 30일

진안군 조례 제2134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65명”을 “57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52명”을 “557명”으로 한다.

별표 3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진안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 <u>565</u>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552</u>명</p> <p>2. (생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u>570</u>명----- -----.</p> <p>1. ----- <u>557</u>명</p> <p>2. (현행과 같음)</p>																																																																																																																																																																																																																																
<p>[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기관별 직급별</th> <th>총계</th> <th>본청</th> <th>의회 사무과</th> <th>직속 기관</th> <th>사업소</th> <th>읍·면</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u>565</u></td> <td></td> <td></td> <td><u>565</u></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 계</td> <td>1</td> <td></td> <td></td> <td>1</td> <td></td> <td></td> </tr> <tr> <td> 군수</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u>533</u></td> <td></td> <td></td> <td><u>533</u></td> <td></td> <td></td> </tr> <tr> <td> 4급</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4-5급</td> <td>2</td> <td>2</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5급</td> <td>24</td> <td>9</td> <td>2</td> <td>2</td> <td>1</td> <td>11</td> </tr> <tr> <td>6급 이하 소계</td> <td><u>504</u></td> <td></td> <td></td> <td><u>504</u></td> <td></td> <td></td> </tr> <tr> <td>전문경력관 소계</td> <td>2</td> <td></td> <td></td> <td>2</td> <td></td> <td></td> </tr> <tr> <td>연구직 계</td> <td>2</td> <td></td> <td></td> <td>2</td> <td></td> <td></td> </tr> <tr> <td> 연구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연구사</td> <td>2</td> <td></td> <td></td> <td>2</td> <td></td> <td></td> </tr> <tr> <td>지도직 계</td> <td><u>29</u></td> <td></td> <td></td> <td><u>29</u></td> <td></td> <td></td> </tr> <tr> <td> 지도관</td> <td>2</td> <td></td> <td></td> <td>2</td> <td></td> <td></td> </tr> <tr> <td> 지도사</td> <td><u>27</u></td> <td></td> <td></td> <td><u>27</u></td> <td></td> <td></td> </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u>565</u>			<u>565</u>			정무직 계	1			1			군수	1	1					일반직 계	<u>533</u>			<u>533</u>			4급	1	1					4-5급	2	2					5급	24	9	2	2	1	11	6급 이하 소계	<u>504</u>			<u>504</u>			전문경력관 소계	2			2			연구직 계	2			2			연구관							연구사	2			2			지도직 계	<u>29</u>			<u>29</u>			지도관	2			2			지도사	<u>27</u>			<u>27</u>			<p>[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기관별 직급별</th> <th>총계</th> <th>본청</th> <th>의회 사무과</th> <th>직속 기관</th> <th>사업소</th> <th>읍·면</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u>570</u></td> <td></td> <td></td> <td><u>570</u></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 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군수</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u>539</u></td> <td></td> <td></td> <td><u>539</u></td> <td></td> <td></td> </tr> <tr> <td> 4급</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4-5급</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5급</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6급 이하 소계</td> <td><u>510</u></td> <td></td> <td></td> <td><u>510</u></td> <td></td> <td></td> </tr> <tr> <td>전문경력관 소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구직 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연구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연구사</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지도직 계</td> <td><u>28</u></td> <td></td> <td></td> <td><u>28</u></td> <td></td> <td></td> </tr> <tr> <td> 지도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지도사</td> <td><u>26</u></td> <td></td> <td></td> <td><u>26</u></td> <td></td> <td></td> </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u>570</u>			<u>570</u>			정무직 계	-			-			군수	-	-					일반직 계	<u>539</u>			<u>539</u>			4급	-	-					4-5급	-	-		-			5급	-	-	-	-	-	-	6급 이하 소계	<u>510</u>			<u>510</u>			전문경력관 소계	-			-			연구직 계	-			-			연구관							연구사	-			-			지도직 계	<u>28</u>			<u>28</u>			지도관	-			-			지도사	<u>26</u>			<u>26</u>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u>565</u>			<u>565</u>																																																																																																																																																																																																																													
정무직 계	1			1																																																																																																																																																																																																																													
군수	1	1																																																																																																																																																																																																																															
일반직 계	<u>533</u>			<u>533</u>																																																																																																																																																																																																																													
4급	1	1																																																																																																																																																																																																																															
4-5급	2	2																																																																																																																																																																																																																															
5급	24	9	2	2	1	11																																																																																																																																																																																																																											
6급 이하 소계	<u>504</u>			<u>504</u>																																																																																																																																																																																																																													
전문경력관 소계	2			2																																																																																																																																																																																																																													
연구직 계	2			2																																																																																																																																																																																																																													
연구관																																																																																																																																																																																																																																	
연구사	2			2																																																																																																																																																																																																																													
지도직 계	<u>29</u>			<u>29</u>																																																																																																																																																																																																																													
지도관	2			2																																																																																																																																																																																																																													
지도사	<u>27</u>			<u>27</u>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u>570</u>			<u>570</u>																																																																																																																																																																																																																													
정무직 계	-			-																																																																																																																																																																																																																													
군수	-	-																																																																																																																																																																																																																															
일반직 계	<u>539</u>			<u>539</u>																																																																																																																																																																																																																													
4급	-	-																																																																																																																																																																																																																															
4-5급	-	-		-																																																																																																																																																																																																																													
5급	-	-	-	-	-	-																																																																																																																																																																																																																											
6급 이하 소계	<u>510</u>			<u>510</u>																																																																																																																																																																																																																													
전문경력관 소계	-			-																																																																																																																																																																																																																													
연구직 계	-			-																																																																																																																																																																																																																													
연구관																																																																																																																																																																																																																																	
연구사	-			-																																																																																																																																																																																																																													
지도직 계	<u>28</u>			<u>28</u>																																																																																																																																																																																																																													
지도관	-			-																																																																																																																																																																																																																													
지도사	<u>26</u>			<u>26</u>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570	570				
정무직 계	1	1				
군수	1	1				
일반직 계	539	539				
4급	1	1				
4-5급	2	2				
5급	24	9	2	1	1	11
6급 이하 소계	510	510				
전문경력관 소계	2	2				
연구직 계	2	2				
연구관						
연구사	2	2				
지도직 계	28	28				
지도관	2			2		
지도사	26	26				